

38. 페루 (Peru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(사회보험)	가입자 13% / 사용자 0%	가입자 13% / 사용자 0%	-
연금수급 개시 연령	65세	6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20년	20년	-
노령연금 지급률(20년 기준)	평균소득의 30%~45%	평균소득의 30%~45%	-
일시금	의무개인계좌의 경우, 잔액의 95.5% 일시 인출	의무개인계좌의 경우, 잔액의 95.5% 일시 인출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36년(임금 소득자), 1962년(급여 근로자)
- **현행법** : 1973년(국가연금제도), 1992년(개인계좌, 1993년 시행), 2002년(조기퇴직), 2007년(실업자를 위한 조기퇴직), 2009년(민간부문 조기퇴직), 2011년(비기여 노령연금), 2012년(개인계좌), 2012년(장애인), 2015년(중증장애인)

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, 의무개인계좌, 사회부조**
- ※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의무개인계좌제도(SPP)와 공적사회보험제도(SNP)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.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은 가입자는 SPP 가입자가 됨. SNP 가입자는 차후 SPP로 전환할 수 있으나, SPP 가입자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SNP로 전환 가능함

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(SNP)**
 - **당연적용** : 특별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
 - 근로자 소유 기업 및 협동기업의 근로자, 교사, 예술가, 가사노동자, 선원, 언론인 및 무두질 근로자 포함
 - **임의적용** : 가정주부, 자영자
 - **특별제도** : 어민, 외교관,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, 군인 및 경찰

○ 의무개인계좌(SPP)

- 당연적용 :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

○ 사회부조 : 취약계층(폐루시민권자)

4

재원조달

○ 가입자

- 사회보험(SNP)
 - 월 적용 소득의 13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(930 soles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소득 없음
- 의무개인계좌(SPP)
 - 보험료 : 노령급여 + 장애 및 유족보험 + 행정수수료
 - ① 노령급여 : 월 소득의 10%. 단, 어민 8%, 건설근로자 11%, 광산노동자 2%
 - ② 행정 수수료
 - 2013.02.01. 전 보험가입자 :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1.5775%
 - 2013.02.01.이후 보험가입자 :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0.3075%에 연간 계좌잔액의 0.82% ~ 1.25%
 - ③ 장애·유족보험 : 월 적용소득의 1.36%
 - ④ 임의 납부 가능
 - 노령급여 또는 행정 수수료와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소득 없음
 - 장애 및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9,639 soles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(SNP)
 - 월 신고소득의 13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(930 soles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소득 없음
- 의무개인계좌(SPP)
 - 월 소득의 10%(노령급여)에 행정수수료로 평균적으로 총 소득의 1% 및 장애·유족 보험을 위해 월 적용소득의 1.35%가 가산됨
 - 노령급여를 위한 보험료율은 법으로 규정되며, 행정 수수료 및 장애·유족보험을 위한 요율은 연금기금운영자(AFPs)에 의해 결정됨
 - 노령급여 또는 행정 수수료와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소득 없음
 - 장애 및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9.639 soles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제도(SNP) : 없음
- 의무개인계좌(SPP) : 없음
 - 단, 어민의 경우 총 소득의 5%, 건설근로자는 1%, 광산노동자 2%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제도(SNP) : 필요 시 특별보조금 지급
- 의무개인계좌(SPP) : 사회보험제도(SNP)로 인해 발생한 권리 가치의 재정 지원
- 사회부조 : 전액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65세 도달자
 - 고용 지속 가능, 단 가입자의 총 소득이 과세참조단위(UIT)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(UIT는 연 4,200 soles)
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인 55세 도달자(남자) 또는 25년 이상인 50세 도달자(여자) 단, 집단 해고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55세 도달자(남자) 또는 50세 도달자(여자)
 - 피부양자 보충금 : 피부양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(단, 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에 대해 지급
 - 사회보험 노령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노령가족연금(사회보험)
 - 10년 이상 혼인 또는 사실혼이 인정된 65세 이상 부부로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, 부부 합산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지급
 - 노령가족연금은 이혼이나 재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종료가 있으면 지급 중단됨
 - 사회보험 노령가족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65세 도달 자
 - 조기연금
 - 연금 청구 전 최종 12개월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72개월 이상이고 계좌 잔액이 최종 12개월 동안 가입자의 재평가 평균소득의 40% 이상 급여 산정이 가능한 55세 도달자(남자), 50세 도달자(여자)
 - 12개월 연속 실업 상태인 55세 남자, 50세 여자
 - 유해 환경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에 따라 40세~50세 적용, 추가 조건 필요
 - 최저보장연금 : 가입자가 1946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하고 법정 월최저임금 이상의

수준으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개인계좌잔액이 법에서 정한 최저 월 연금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급

- 법정 월 최저임금 : 930 soles
- 월 최저연금 : 500 soles

- 개인계좌 노령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
• 비기여 노령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
- 65세로서 다른 연금이나 사회보장 건강보험제도(EsSalud)에 의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급
- 자산 조사 : SISFOH에 기초하여 극빈으로 분류되어야 함
 - SISFOH는 소득, 지출, 삶의 질 지수에 기초하여 취약 가구를 규정하는 국가 시스템
- 비기여노령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소득능력을 66.7% 이상 상실한 것으로 판정받고 다음의 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5년 이상 또는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 36개월 중 최소 12개월을 포함하여 최소 36개월 이상 납부 또는
 - 비근로 관계 장애인 경우, 장애 발생 전월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또는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 36개월 중 납부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발생 당시 보험료 납부중이었어야 함
- 피부양자 보충금 : 피부양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(단, 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에 대해 지급
- 상시간호보조금 : 가입자가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, 지급

• 장애연금(의무개인계좌)

- 소득능력을 50% 이상 상실한 것으로 판정받고 개인계좌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
- 의료위원회가 장애정도 평가
- 최저보장장애연금 : 개인계좌잔액이 가입자가 수급할 자격이 있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급

• 비기여 장애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
- 심각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받고, 다른 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
- 자산 조사 : SISFOH에 기초하여 빈곤으로 분류되어야 함
 - SISFOH는 소득, 지출, 삶의 질 지수에 기초하여 취약 가구를 규정하는 국가 시스템

○ 유족급여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사회보험 노령/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
- 수급가능 유족 : 여성유족배우자(사실혼 포함), 60세 이상 또는 장애자인 피부양 남성

- 유족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(학생 또는 장애아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,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피부양 부친, 5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피부양 모친
- 유족배우자 연금은 재혼하거나 장애가 호전되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금은 지급 중지됨
- 재혼일시금 : 사회보험 배우자연금을 수급 중인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지급
- 상시간호보조금 : 유족이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, 지급
- 사회보험 유족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유족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개인계좌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사망 직전 8개월 중 최소 4개월의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유족배우자(사실혼 포함), 18세 미만 자녀(장애는 연령무관), 60세 이상 피부양 부친, 50세 이상 피부양 모친
 - 최저보장유족연금 : 사망자의 개인계좌잔액이 유족이 수급할 자격이 있는 연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급
- 사망일시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, 법정상속인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- 장제비(의무개인계좌)
 - 사망자가 개인계좌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였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했던 경우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194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의 경우, 2002년 6월 14일 기준 가입자 연령에 따라 최종 60개월 동안의 가입자 평균소득의 30~45%(31세 미만 30%, 31~39세 35%, 40~49세 40%, 49세 초과 45%)에 20년 초과 납부기간 1년당 평균 월 소득의 2%씩 가산하여 지급
 - 1947년 1월 1일 전 출생한 자의 경우, 1932년 12월 18일 후 출생한 남자 또는 1937년 12월 18일 후 출생한 여자는 가입자 기준소득의 50%에 20년 초과 납부기간 1년당 기준소득의 4%씩 가산하여 지급
 - 납부기간이 20~24년인 자의 기준소득은 최종 5년간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, 25~30년인 경우 최종 4년간 월 평균소득, 30년 초과하는 경우 최종 3년 간 평균소득
 - 1932년 12월 18일 이전 출생한 남자 또는 1937년 12월 18일 이전 출생한 여자의 경우, 기준소득의 50%에 남자 15년, 여자 13년 초과 납부기간 1년당 기준소득의 남자 2%, 여자 2.5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기준소득은 최종 12개월, 36개월 또는 60개월 간 가입자의 평균소득 중 높은 금액으로 함
 - 조기연금 : 정상 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 1년당 4%씩 감액
 - 피부양자보충금 : 가입자 기준소득의 2~10%를 수급 가능 유족배우자에게, 2~5%를

수급 가능 자녀에게 지급

- 월 최저 노령연금액 : 500 soles
- 월 최대 노령연금액 : 893 soles 또는 최종 60개월 간 가입자의 월평균소득 중 낮은 금액
- 급여 조정 : 급여는 예산 재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됨
- 노령가족연금(사회보험)
 - 부부의 공동 기준소득에 기초하여, 노령연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함
 -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, 월 노령가족연금의 합산 총액이 유족수급권자에게 계속해서 지급됨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가입자는 다음 5가지 중 한 가지 선택 가능
 - 정기적 인출, 개인연금 구입, 공동 및 유족연금 구입, 일시적으로 정기인출이 되는 거치연금 구입, 총 계좌 잔액의 95.5% 일시 인출
 - 조기연금 : 지급 선택은 정상 수급연령의 노령연금과 동일함
 - 최저보장 연금 : 개인계좌 잔액에 따른 월 연금액과 월 최저노령연금액 간의 차액 지급
 - 월 최저노령연금액은 500 soles
 - 가입자가 일시금 인출을 선택할 경우, 4.5%는 의료급여 재원으로 사용
- 비기여 노령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2개월마다 250 soles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기준소득의 50%에 3년 초과 납부기간 1년당 기준소득의 1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~3년인 경우 납부기간 1년당 기준소득의 16.7% 지급
 - 기준소득은 최종 12개월간 가입자 월평균소득. 단, 자영자의 경우 기준소득은 최종 60개월간 가입자 월평균소득으로 함
 - 월 최저 장애연금액 : 500 soles
 - 월 최대 장애연금액 : 893 soles
 - 피부양자보충금 : 가입자 기준소득의 2~10%를 수급 가능 유족배우자에게, 2~5%를 수급 가능 자녀에게 지급. 단, 소득과 연금의 합산액이 가입자의 예전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됨
 - 상시간호보조금 : 법정 월최저임금(930 soles)과 동일
 - 급여 조정 : 급여는 예산 재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됨
- 장애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연금액은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과 장애 정도를 기초로 산정됨
 - 최저보장장애연금 : 개인계좌 잔액을 기초로 산정된 장애연금이 가입자가 받아야 할 영구장애연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, 장애보험에서 차액 지급
- 비기여 장애연금 : 월 150 soles을 2개월마다 지급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50%를 수급 조건을 충족한 유족배우자에게 지급
 - 재혼일시금 : 배우자연금의 12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50%를 수급조건을 충족한 고아에게 지급
 - 피부양부모 연금 : 수급권 있는 배우자 또는 고아가 없는 경우, 피부양 부모 1인당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0% 지급
 - 모든 유족급여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 또는 월 893 soles(둘 중 적은 금액)를 초과할 수 없음
 - 상시간호보조금 : 법정 월최저임금(930 soles)과 동일
 - 급여 조정 : 급여는 예산 재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됨
- 유족연금(의무개인계좌)
 - 연금액은 법률에 따라 사망자의 사망 직전 최종 48개월 간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함
 - 최저보장연금 : 사망자의 개인계좌 잔액을 기초로 산정된 유족연금이 유족이 받아야 할 연금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, 생명보험에서 차액 지급
- 사망일시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의 사망 직전 최종 60개월 월평균 소득의 6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 - 사망일시금 산정 시 사용되는 월 소득 상한은 893 soles임
- 장제비(의무개인계좌)
 - 4,370.97 soles을 한도로 일시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됨

7

관리운영기관

○ 공화국 감사원(Comptroller General of the Republic)

- 사회보험제도의 전반적 감독
- www.contraloria.gob.pe

○ 은행.보험.연금기금 감독청(Superintendent of Banks, Insurance, and AFPs)

- 연금기금 운영자(AFPs)와 보험회사의 인.허가와 감독에 대한 책임
- www.sbs.gob.pe

○ 개발 및 사회통합부(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)

- 사회부조제도 전반적 감독, 비기여 장애연금제도 운영
- www.midis.gob.pe

- **사회보장표준화 사무소(Office of Social Security Normalization)**
 - 사회보험제도 운영
 - www.onp.gob.pe

- **연금기금운영자(AFPs)**
 - 의무개인계좌제도 운영 및 장애·유족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와 계약

- **국가 연대 지원프로그램(National Solidarity Assistance Program)**
 - 「연금65」 제도 운영
 - www.pension65.gob.pe

- **세금행정 국가감독청(National Superintendent of Tax Administration)**
 - 보험료 징수
 - www.sunat.gob.pe

<2019년 ISSA 자료>